

# 전자출결시스템 및 출결 지침 안내

## □ 전자출결시스템 안내

1. 시스템명: '헤이영캠퍼스' 전자출결시스템
2. 대상강좌: 본교 개설 전체 교과목  
※ 전용 통합플랫폼 활용 온라인수업(바이오헬스 교과목, HUSS 교과목, 대학 e-러닝 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등) 제외
3. 주요기능
  - 가. 비콘, 블루투스 기반 자동 출결
  - 나. 출결 현황 실시간 확인
  - 다. 공결 신청, 강의공지, Push 서비스 기능 등 지원
4. 이용방법
  - 가. 앱 설치
    - 1) 앱명: 헤이영캠퍼스
    - 2) 앱스토어(iOS) 및 플레이스토어(Android)에서 다운로드(<https://campus.heyong.co.kr/intro/install.html>)
  - 나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 - 1)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
    - 2) 학교 선택 시 '상명대학교' 선택(아이디/암호 샘플포털시스템과 동일)  
※ 세부 앱 이용방법은 첨부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유의사항
  - 가. 출석 체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, 최종적으로 출결 인증을 받으려면 데이터 통신, 또는 WIFI 통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- 나. 시스템 오류에 따른 출석 미처리 시 반드시 담당 교·강사에게 수동으로 출석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출결 지침 안내

### 1. 결석, 지각, 조퇴의 정의

- 가. 결석: 수업기간 중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
  - 나. 지각: 수업시작 후 10분까지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
  - 다. 조퇴: 수업시간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
- ※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환산함  
※ 학적변동에 따라 개강 후 복학하는 경우 확정된 복학일 이전은 결석으로 처리

### 2. 공결

- 가. 인정범위 및 일수
  - 1)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의 사망: 5일
  - 2) 형제자매의 사망: 3일
  - 3) 부모의 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의 사망: 3일
  - 4) 질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등: 해당기간
  - 5) 출산: 본인 20일, 배우자 5일
  - 6) 학교현장실습(학교현장실습학기제 포함): 해당기간
- 나. 신청방법: 사유 발생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(진단서/통지서/공문 등)를 담당 교·강사에게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

### 3. 공결 외 출석인정 신청(결석계 등)

#### 가. 신청가능 사유

- 1)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출석
- 2) 수업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한 교내 행사 참석
- 3) 무시험검정(교직이수)

#### 나. 신청방법

- 1) 사유 발생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(진단서/통지서/공문 등)를 담당 교·강사에게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
  - 2) 교·강사는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음
- 다. 「학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」에 의거 '공결 외 출석인정' 기간은 통합하여 해당 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

### 4. 출결 성적처리

- 가. 「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(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)」에 의거 전체 수업시간 수의 1/4시간 이상 결석한 학생은 성적등급 부여 시 'F'등급 외 부여 불가
- ※ 단, 졸업직전학기에 취업계를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함
  - ※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인 경우 1회 결석으로 환산함
  - ※ 적용예시

① 1시간 강의인 경우: 총수업시수 $15 \times 1/4 = 3.75$	→ 4시간 결석 시 F등급 부여
② 2시간 강의인 경우: 총수업시수 $30 \times 1/4 = 7.5$	→ 8시간 결석 시 F등급 부여
③ 3시간 강의인 경우: 총수업시수 $45 \times 1/4 = 11.25$	→ 12시간 결석 시 F등급 부여

### 5. 부정 출석 징계 사항

#### 가. 부정 출석 유형

- 1) 본인이 아닌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리 출석 처리하는 행위
- 2) 실제 출석하지 않고 위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
- 3) 출석인정 증빙서류(진료확인서 등)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유로 제출하는 행위 등

#### 나. 부정 출석 행위 시 「학생상벌 규정」에 따라 중대한 학사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한다.

- ※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, 진료 확인서 등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는 「사문서위조·변조죄」(형법 제231조)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임
- ※ 증빙서류 위조, 조작 의심사례 발견 시 교무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## 6. 문의

#### 가. 전자출결시스템 사용문의

- 1) 헤이영캠퍼스 전용 콜센터: 1599-8035
- 2) 서울캠퍼스: 학사운영팀 02-2287-5012
- 3) 천안캠퍼스: 교무팀 041-550-5015

#### 나. 전공/교직 교과목 문의

- 1) 서울캠퍼스: 학사운영팀 02-2287-5012
- 2) 천안캠퍼스: 교무팀 041-550-5015

#### 다. 교양 교과목 문의

- 1) 서울캠퍼스: 계당교양교육원교학팀 02-2287-5110
- 2) 천안캠퍼스: 계당교양교육원교학지원팀 041-550-5415